현대해상
Hicar DIR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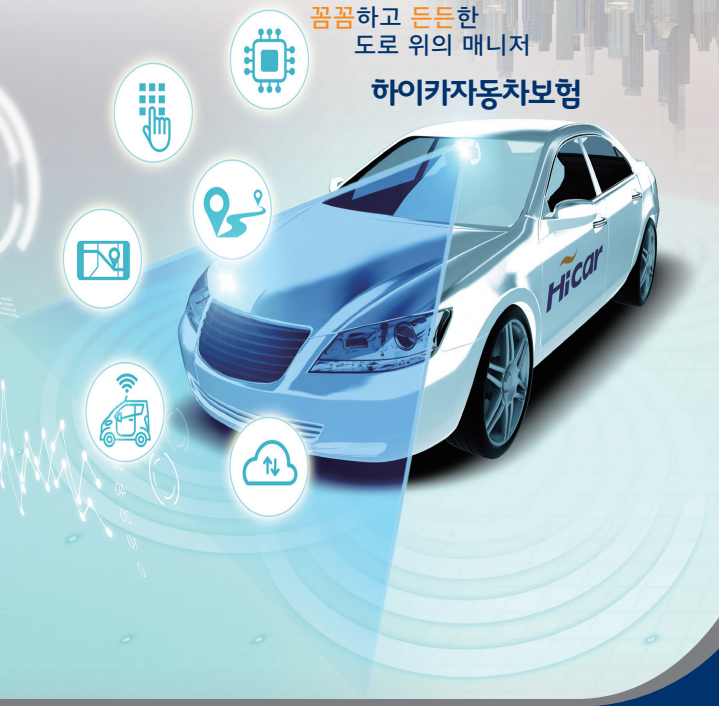
2024. 12. 21 개정

# 업무용자동차보험 약관

Hyundai Insurance

꼼꼼하고 든든한
도로 위의 매니저

**하이카자동차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항상 저희 현대해상을 사랑해 주시는 계약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고객 여러분의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국내 최고의 손해보험회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세계 굴지의 보험회사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해상은 고객의 만족을 회사활동의 중심에 두고 가정에는 행복, 기업에는 번영을 제공하여 풍요로운 사회와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의 지도와 사랑에 힘입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 본 약관내용중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특약에 한하여 보상받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1. 청약서상 자필서명
2. 청약서 부본전달
3.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하였을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시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

**(Hicar 다이렉트 업무용, Hicar 다이렉트 업무용(CM) 포함)**

| 가 입 대 상 |
| --- |
|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

# 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제2조(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구성)

## 제2편 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 제1장 배상책임

#### 제1절 「대인배상 I」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4조(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2절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제7조(피보험자)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13조(피보험자)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제18조(피보험자)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제3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제22조(피보험자)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제26조(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제27조(제출 서류)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제31조(제출 서류)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36조(합의 등의 협조 · 대행)
제37조(공탁금의 대출)

## 제4편 일반 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41조(청약의 철회)
제42조(보험기간)
제43조(사고발생지역)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제52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약관의 해석)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정보의 제공)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제60조(분쟁의 조정)
제61조(관할법원)
제62조(준용규정)

## [별 표]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 지급기준
<별표 2>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별표 3>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
<별표 4> 과실상계 등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붙 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붙 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1.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 2. 단기요율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
| 3. 마약 또는 약물 등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 4. 무면허 운전(조종)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 5. 무보험 자동차 |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br>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br>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br>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동차<br>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
|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br>나.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br>(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br>(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br>(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br>(4) 부속기계장치<br>다. 부속기계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

| | |
|---|---|
|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용어풀이><br>(*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br>(*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br>(*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
| 7. 운전 (조종) |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 8. 운행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
| 9. 음주운전 (조종) |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10.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 11. 자동차 보유자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
| 12. 자동차 취급업자 |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
| 13. 피보험자 |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br>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br>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br>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br>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br>마.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
| 14. 피보험 자동차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
|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가.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br>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br>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

| | |
|---|---|
| 16.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 |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br>나. 인명보호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1)를 말합니다.<br>다.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2)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3)<br><용어풀이><br>(*1) 예 :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더자켓 · 팬츠 · 부츠 등 이 와 유사한 일반의류는 제외)<br>(*2)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br>(*3)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
| 17. 차종 | 차종이란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규정하고 있는 차종 구분을 말합니다. |
| 18.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19. 보험가액 |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br>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 20. 마약·약물 운전 |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제2조(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1.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의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준용하여 보상합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
| 가.「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
| 나.「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 다.「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
| 가.「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 다.「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 보상 |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 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적용보험료 계산>

적용 보험료 = 기본 보험료 ×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경력요율 ×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특별계약 적용요율 × 물적사고 할증기준 요율 × 특별 요율 × 사고건수 요율

| 구 분 | 내 용 |
|---|---|
| 기본 보험료 |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특약요율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br>*특약요율 :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
| 가입자 특성요율 |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 특별계약 적용요율 | 위장사고,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 피보험자를 변경함으로써 할증 보험료를 회피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하는 요율 |
| 물적사고 할증기준 요율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50·100·150·200만원 중 계약자가 선택한 가입금액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br>*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확대 특약 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수준에 따라 할인할증 적용등급 변동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 |
| 특별요율 |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 |
| 사고건수 요율 |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 제2편 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 제1장 배상책임

###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Ⅰ」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그 밖의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인한 손해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8호 및 제3항 제6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 지급 보험금 | =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 | 비용 | - | 공제액 |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용어풀이>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나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 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용어풀이>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3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2. 제1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8.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3>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3>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급 보험금 | = | 실제손해액 | + | 비용 | - | 공제액 |
|---|---|---|---|---|---|---|

1. 실제손해액은 '<별표1~5>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써 <별표 4>의 1.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 포함)및 「대인배상I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다.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이 경우 관련 내용(업무상 재해 등)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다만, 제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1)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2)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제18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함)
3.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5.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는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에만 피보험자로 봅니다.

###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지급 보험금 | =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 | 비 용 | - | 공제액 |
|---|---|---|---|---|---|---|

1. '지급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나.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마.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 제4절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2)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차(*3)와의 직접적인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③ 보험회사는 위 '②'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와 충돌 또는 접촉한 타차의 등록번호(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말함)와 사고당시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용어풀이>

(*1)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2)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3) '타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제22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1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1)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용어풀이>
(*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지급 보험금 | =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 | 비 용 | -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

1.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1)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2)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용어풀이>
(*1)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불명사고 포함) 또는 일방과실사고로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에 따라 수리비의 일정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중요한 부분이란 엔진, 미션, 캐빈, 적재함, 바디 및 전기자동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1)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4.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시 사고 당사자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 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

과 실제 손해액에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1)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시에 종료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1)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1)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장종목 |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
| 1.「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 |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때 |
| 2.「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
| 3.「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
| 4.「자기차량손해」 |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

###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

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7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 |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
| 1. 보험금 청구서 | ○ | ○ | ○ | ○ |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 ○ | ○ | ○ |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 | ○ | | ○ |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 | | | | ○ |
|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 | | | | ○ |
|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 | | | | ○ |
|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 | | | | |
|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시 말소 사실증명서 | | | ○ | | |
|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 | ○ | ○ | | |
|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 | ○ | ○ | | |
|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 | ○ | ○ |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금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31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 대인배상 Ⅰ·Ⅱ | 대물배상 |
|---|---|---|
|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 |
| 2. 손해배상청구서 | ○ | ○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 |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 서류)에서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37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 제4편 일반사항

###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몰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나.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4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1조(청약의 철회)**

① 일반금융소비자(*1)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전문금융소비자(*2)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용어풀이>
(*1) '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2) '전문금융소비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④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⑥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5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보험기간 |
|---|---|
| 1. 원칙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1) 및 의무보험 |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용어풀이>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3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출·퇴근 시 승용차 함께타기 등)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간, 2종·3종화물자동차 간, 초소형·경·4종 화물자동차 간 또는 경·3종 승합자동차 간, 개인소유 1종·2종·3종화물자동차 간 또는 개인소유 1종·2종·3종승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기납입보험료 총액 × $\frac{\text{해당기간}}{\text{1년}}$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하는 위법계약 해지권에 따라 해지하거나,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

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10.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 시 이 보험계약과 동일한 종류의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2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보험회사가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개월이 지난 경우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3. 보험계약이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55조(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정보의 제공)**

①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 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분쟁의 조정)**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61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62조(준용규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 항 목 | 지급 기준 |
|---|---|
| 1. 장례비 | 지급액: 5,000,000원 |
| 2. 위자료 |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br>(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br>(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br>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
| 3. 상실 수익액 | 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br>〈산 식〉<br>(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br>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br>(1) 유직자 |

| | |
|---|---|
| 3. 상실 수익액 | (가) 산정대상기간<br>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br>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br>(나) 산정방법<br>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br>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br>가) 급여소득자<br>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br><용어 풀이><br>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br>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br>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br>나) 사업소득자<br>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br>〈산식〉<br>[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br>㈜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br>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br>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br>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br>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br>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 | |
|---|---|
| 3. 상실 수익액 | <용어 풀이><br>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br>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br><산 식><br>(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br>*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br><br>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br>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br>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br><용어 풀이><br>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br><br>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br>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br>가) 급여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br>나) 사업소득자 : 일용근로자 임금<br>다) 그 밖의 유직자<br>일용근로자 임금<br>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br>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br>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br>(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br>(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br><br>(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br>(가) 현역병 등 군 복무자(급여소득자는 제외)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본인 소득(단, 병역법에 따른 잔여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br>(나) 현역병 등 군 복무예정자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단, 병역법에 따른 예정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

| | |
|---|---|
| 3. 상실 수익액 | <용어풀이><br>① '현역병 등'이라 함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의무소방원·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함<br>② '병역법에 따른 잔여 또는 예정 복무기간'이라 함은 현역병은 병역법 제19조에 따른 기간, 의무소방원·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기간,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42조에 따른 기간에 대해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계산한 기간을 말함<br>③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본인 또는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산술평균을 말함<br><br>(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br>(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br>(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br>(6) 외국인<br>(가) 유직자<br>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br>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br>(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br>다. 생활비율: 1/3<br>라. 취업가능월수<br>(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br>(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br><br><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br>피해자의 나이 / 취업가능월수<br>62세부터 67세 미만 / 36개월<br>67세부터 76세 미만 / 24개월<br>76세 이상 / 12개월<br><br>(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br>(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br>(5) 외국인 |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용어풀이>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frac{1}{1+i} \quad \frac{1}{1+2i} + \cdots + \frac{1}{1+ni}$$

i=5/12%, n=취업가능월수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 항 목 | 지급 기준 |
|---|---|
| 1.적극손해 |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br>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br>(1) 입원료<br>(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br>(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br>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br>(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음. |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2.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원)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
| 1 | 200 | 5 | 75 | 9 | 25 | 13 | 15 |
| 2 | 176 | 6 | 50 | 10 | 20 | 14 | 15 |
| 3 | 152 | 7 | 40 | 11 | 20 | | |
| 4 | 128 | 8 | 30 | 12 | 15 | | |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위자료를 지급함.

3.휴업손해

3.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 풀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산 식〉

$$1일\ 수입감소액 \times 휴업일수 \times \frac{85}{100}$$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70세로 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나) 가사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종사하게 한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어 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4. 간병비

<용어 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 상해등급 | 인정일수 |
|---|---|
| 1급~2급 | 60일 |
| 3급~4급 | 30일 |
| 5급 | 15일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table>
<tr><th>항목</th><th>지급 기준</th></tr>
<tr><td>1. 위자료</td><td>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br>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br>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br>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br>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br>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br>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br>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br>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br>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br>
(단위: %, 만원)
<table>
<tr><th>노동능력상실률</th><th>인정액</th></tr>
<tr><td>45% 이상 50% 미만</td><td>400</td></tr>
<tr><td>35% 이상 45% 미만</td><td>240</td></tr>
<tr><td>27% 이상 35% 미만</td><td>200</td></tr>
<tr><td>20% 이상 27%미만</td><td>160</td></tr>
<tr><td>14% 이상 20% 미만</td><td>120</td></tr>
<tr><td>9% 이상 14% 미만</td><td>100</td></tr>
<tr><td>5% 이상 9% 미만</td><td>80</td></tr>
<tr><td>0 초과 5% 미만</td><td>50</td></tr>
</table>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td></tr>
<tr><td>2. 상실수익액</td><td>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br>
〈산식〉<br>
월평균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br>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br>
(1) 유직자<br>
(가) 산정대상기간<br>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td></tr>
</table>

| | |
|---|---|
| |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br>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br>(나) 산정방법<br>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br>(2) 가사종사자<br>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br>(3) 무직자(학생포함)<br>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br>(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br>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br>(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br>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br>(6) 외국인<br>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br>다. 노동능력상실률<br>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br>라. 노동능력상실기간<br>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br>마. 호프만 계수<br>사망한 경우와 동일 |
| 3. 가정 간호비 | 가. 인정 대상<br>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br>(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br>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br>(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br>(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br>(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br>(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br>(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br>(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br>(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br>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br>(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br>(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

| | |
|---|---|
| |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br>(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br>나. 지급 기준<br>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

**<별표 2>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

| 항 목 | 지급 기준 |
|---|---|
| 1. 수리비용 | 가. 지급대상<br>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br>나. 인정기준액<br>(1) 수리비<br>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1)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br>(*1)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br>(2) 열처리 도장료<br>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br>(3) 한도<br>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br>(가) 내용연수(*2)가 지난 경우<br>(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br>(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br>(*2)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
| 2. 교환가액 | 가. 지급대상<br>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br>(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br>나. 인정기준액<br>(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br>(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
| 3. 대차료 | 가. 대상<br>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br>나. 인정기준액<br>(1) 대차를 하는 경우<br>(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 |

| | |
|---|---|
| 3. 대차료 | 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br>(*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br>(*2)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br>(*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br>(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1)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br>(*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br>(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br>(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br>(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br>(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br><br>다. 인정기간<br>(1) 수리 가능한 경우<br>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br>(*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br>(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4. 휴 차 료 | 가. 지급대상<br>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br>나. 인정기준액<br>(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br>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br>(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br>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br>다. 인정기간<br>(1) 수리 가능한 경우<br>(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

| | |
|---|---|
| |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br>(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 5. 영업손실 | 가. 지급대상<br>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br>나. 인정기준액<br>(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br>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br>(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br>일용근로자 임금<br>다. 인정기간<br>(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않음.<br>(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
| 6.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 가. 지급대상<br>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br>나. 인정기준액<br>(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br>(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br>(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
| 7. 견인비용 | 가. 지급대상<br>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br>나. 인정기준액<br>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 |

**<별표 3>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 상해등급 | 보험가입금액 | | |
|---|---|---|---|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 2급 | 800만원 | 1,600만원 | 2,700만원 |
| 3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 4급 | 700만원 | 1,400만원 | 2,300만원 |
| 5급 | 500만원 | 1,000만원 | 1,650만원 |
| 6급 | 400만원 | 800만원 | 1,300만원 |
| 7급 | 250만원 | 500만원 | 800만원 |
| 8급 | 180만원 | 360만원 | 600만원 |
| 9급 | 140만원 | 280만원 | 450만원 |
| 10급 | 120만원 | 240만원 | 400만원 |
| 11급 | 12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12급 | 120만원 | 180만원 | 290만원 |
| 13급 | 80만원 | 130만원 | 210만원 |
| 14급 | 50만원 | 80만원 | 13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 장애 등급 | 보험가입금액 | | | |
|---|---|---|---|---|
|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1급 | 1,5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 1억원 |
| 2급 | 1,350만원 | 2,700만원 | 4,500만원 | 9,000만원 |
| 3급 | 1,200만원 | 2,400만원 | 4,000만원 | 8,000만원 |
| 4급 | 1,050만원 | 2,100만원 | 3,500만원 | 7,000만원 |
| 5급 | 900만원 | 1,800만원 | 3,000만원 | 6,000만원 |
| 6급 | 75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5,000만원 |
| 7급 | 600만원 | 1,200만원 | 2,000만원 | 4,000만원 |
| 8급 | 45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 9급 | 360만원 | 72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 10급 | 270만원 | 540만원 | 900만원 | 1,800만원 |
| 11급 | 210만원 | 42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 12급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 13급 | 90만원 | 180만원 | 300만원 | 600만원 |
| 14급 | 60만원 | 12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별표 4> 과실상계 등**

| 항목 | 지급 기준 |
|---|---|
| 1. 과실상계 | 가. 과실상계의 방법<br>(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br>(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br>(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br>(*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br>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br>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
| 2. |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

| 손익상계 | |
|---|---|
|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5>「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
| 4. 기왕증 |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br>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br>(*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별표 5>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 감액비율(*1) |
|---|---|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 100% |
|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 40% |
| 동승자의 요청 동승 | 30% |
| 상호 의논합의 동승 | 20% |
| 운전자의 권유 동승 | 10% |
| 운전자의 강요 동승 | 0% |

(*1)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정요소

| 수정요소 | 수정비율 |
|---|---|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20% |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 제2항 관련)

| 기 간 | 지 급 이 자 |
|---|---|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 상해 급별 | 한도 금액 | 상해내용 |
|---|---|---|
| 1급 | 3천만원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 | |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 |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 | 5. 척추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 | |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
| | |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
| | |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
| | |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 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
| | | 14.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
| | |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2급 | 1,500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
| | |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
| | |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
| | | 5.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
| | |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
| | |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 3급 | 1,200 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
| | |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 | |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 |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
| | |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
| | |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

| | | |
|---|---|---|
| 3급 | 1,200만원 |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 | |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
| | |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
| | |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 | |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4급 | 1천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 | |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 |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
| | | 4. 흉부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
| | |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
| | |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해당한다) |
| | | 8. 상완골 경부 골절 |
| | |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
| | |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 |
| | |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
| | |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
| | |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 |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 |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 | |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
| | |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
| | |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 | |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
| | |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 |
|---|---|---|
| 5급 | 9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
| | |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
| | | 4. 안정성 추체 골절 |
| | |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 | | 6. 상완골 간부 골절 |
| | |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 |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
| | |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
| | | 11. 수근 주상골 골절 |
| | |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 | |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
| | |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 | | 20. 슬개골 골절 |
| | |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
| | |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
| | |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
| | |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 |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 7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
| | |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 | |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
| | | 4. 심장 타박 |
| | |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

| | | |
|---|---|---|
| | |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 |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
| | |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
| | |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
| | | 18. 요골 경부 골절 |
| | | 19. 척골 주두부 골절 |
| | |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
| | |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
| | |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
| | |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 500만원 |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
| | |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 | |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
| | | 5. 쇄골 골절 |
| | |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
| | |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
| | |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
| | |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 | |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 |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 |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
| | |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
| | |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
| | |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

| | | |
|---|---|---|
| | |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
| | |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
| | |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
| | |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 3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 | |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
| | | 3. 외상성 시신경병증 |
| | |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5. 복합 고막 파열 |
| | |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
| | |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
| | |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12. 중수골 골절 |
| | |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
| | |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
| | |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
| | |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 ~ 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 |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 | |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9급 | 240만원 |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
| | |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5. 흉골 골절 |
| | | 6. 추간판 탈출증 |
| | | 7. 흉쇄관절 탈구 |

| | | |
|---|---|---|
| | |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 |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11. 수지관절 탈구 |
| | |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 15.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
| | |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 |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 | 200만원 |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
| | |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 | |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
| | |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
| | |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1급 | 160만원 | 1. 뇌진탕 |
| | |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
| | |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2급 | 120만원 |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 | |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
| | | 3. 척추 염좌 |
| | |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
| | |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 | |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3급 | 80만원 |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 | 2. 단순 고막 파열 |
| | |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
| | |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4급 | 50만원 |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 2. 수족지 관절 염좌 |
| | | 3. 사지의 단순 타박 |
| | |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 |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 영역별 세부지침

| 영역 | | 내용 |
|---|---|---|
| 공통 | |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 이라 한다) |
| | |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
| | |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
| | |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일 때 소아로 인정한다. |
| | |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 피부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
| 두부 | |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
| | | 4급 이하에서 의식 이외에 뇌신경 손상이나(국소)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 상향조정 가능하다. |
| | |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 ~ 12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다. |
| | |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 |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준용한다. |
| | |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에 준용한다. |
| | |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에 준용한다. |
| | |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만 적용한다. |
| 흉·복부 | |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
| 척추 | |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
| | |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
| | |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
| | |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에 준용한다. |
| 상·하지 | 공통 |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 | |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 | | |
|---|---|---|
| 상·하지 | 공통 |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
| | |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 | |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 |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
| | | 관절 이단의 경우 상위부 절단을 준용한다. |
| | |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을 준용한다. |
| | |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을 준용한다. |
| | |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 |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 | |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 |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 | |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
| | |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
| | | 근, 건, 인대 파열이라 함은 완전 파열을 의미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준용한다. |
| | | 사지골 골절 중 불명확한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
| | |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
| | |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
| | 상지 |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
| | |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
| | |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
| | |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
| | |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의미한다. |
| | 하지 |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
| | | 천골 골절, 미골 골절도 골반골 골절로 준용한다. |
| | |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

| | | |
|---|---|---|
| 상·하지 | 하지 |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을 준용한다. |
| | |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을 준용한다. |
| | |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에 준용한다. |
| | |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
| | |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
| | |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
| | |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 |
| | |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장애 급별 | 한도 금액 | 신체장애 내용 |
|---|---|---|
| 1급 | 1억 5천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br>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br>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br>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br>5. 반신불수가 된 사람<br>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br>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br>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br>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2급 | 1억 3,500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br>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br>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br>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br>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br>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3급 | 1억 2,000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br>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br>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br>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br>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4급 | 1억 5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br>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br>3. 고막이 전부 결손 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br>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br>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br>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 |
|---|---|---|
| 5급 | 9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br>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br>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br>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br>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br>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br>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br>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6급 | 7,5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br>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br>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br>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br>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br>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7급 | 6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br>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br>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br>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br>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br>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br>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br>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br>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8급 | 4,500만원 |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br>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br>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br>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br>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br>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br>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br>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 | |
|---|---|---|
| 9급 | 3,8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br>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br>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br>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br>5. 코가 결손 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br>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br>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br>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br>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br>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br>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br>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10급 | 2,700만원 |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br>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br>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br>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br>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br>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br>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br>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br>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11급 | 2,300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br>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br>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br>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br>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br>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 |
|---|---|---|
| 11급 | 2,300만원 |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br>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 12급 | 1,900만원 |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br>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br>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br>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br>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br>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br>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br>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br>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br>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br>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13급 | 1,500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br>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br>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br>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br>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br>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br>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br>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br>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br>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br>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14급 | 1천만원 |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br>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br>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br>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br>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br>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br>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br>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비 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함)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함)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痺)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Ⅰ. 운전자 범위

### 1. 운전자 연령 제한

[1] 운전자 연령 만21/24/26/30/35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2] 운전자 연령 만43/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2. 운전자 범위 제한

[3]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4]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5]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6]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3. 운전자 범위 확대

[7]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8]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

## Ⅱ. 보험료 할인

[9]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

[10] Hicar Green 서비스(전자약관 등) 특별약관

[11] 효도하는 자녀(만 12세 이하) 할인 특별약관

[12] 스마트 안전운전(UBI) 할인 특별약관

[13]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14]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15] 첨단안전장치 장착 할인 특별약관

[16] 친환경 에코부품 사용 할인 특별약관

[17]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할인 특별약관

[18]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Ⅰ (계기판 사진전송 방식)

[19]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Ⅱ (커넥티드 방식)

[20] 어린이 통학버스 할인 특별약관

## Ⅲ. 보장 확대

### 1. 본인 및 가족 상해 담보

[2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22] 상해간병비·사망담보 특별약관

[23] 상급병실·성형·치아보철 지원 특별약관

[24] 자녀(만 18세 이하) 사고 피해 지원 특별약관

[25] 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 등 피해 지원 특별약관

[26] 임직원 사고 보상 확대 특별약관

[27] 임직원 치료비 지원담보 특약

**2. 차량 손해**

㉘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㉙ 렌트비용지원 특별약관
㉚ 차량운반비용담보 특별약관
㉛ 신차손해담보 특별약관
㉜ 전손 시 대체차량 등록비용담보 특별약관

**3. 법률비용 / 다른 자동차 운전**

㉝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
㉞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4. 전기자동차**

㉟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
㊱ 전기자동차 충전 중 위험 보장 특별약관
㊲ 전기자동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별약관

**Ⅳ. 기타**

**1. 긴급출동 서비스**

㊳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
㊴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 (중형·화물승합)
㊵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 (친환경자동차)

**2. 보험료 납입**

㊶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㊷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㊸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3. 기타**

㊹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㊺ 관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약관
㊻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㊼ 시험용 운행담보 특별약관
㊽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㊾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㊿ 공작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51 농경용자동차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52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53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대한 대물배상 책임담보 특별약관
54 리스자동차 인도기간 보장담보 특별약관

55 Eco Point 리워드 특별약관
56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57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58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59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60 Eco 마일리지 환급금 대체사용 특별약관
61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62 물류차량 전용 미운행일 환급 특별약관

## Ⅰ. 운전자 범위

### 1. 운전자 연령제한

#### ⑴ 운전자연령 만21/24/26/30/35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21/24/26/30/35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만21/24/26/30/35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만21/24/26/30/35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24/26/30/3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⑵ 운전자연령 만43/48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만 43/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만43/48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만43/48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43/4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 2. 운전자 범위 제한

### ③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개인소유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 및 경·3종 승합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만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2. 보상하는 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5.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 4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개인소유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 및 경·3종 승합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5.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개인소유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 및 경·3종 승합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계부모
(부모, 양부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양자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제외)

⑤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⑥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자녀, 계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제외)

###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 [6]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법인소유 승용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②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④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손해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1)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임직원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운전자가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위 '1'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기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 3. 운전자범위 확대

#### ⑦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 개인소유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 및 경·3종승합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대리운전 하던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은 제외함)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해당 대리운전자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보아 보상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운전자 범위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1)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자'라 함은 자동차취급업자로서 소속된 대리운전업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명시된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대리운전'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운전하여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장소까지 이동하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의 금액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이동하는 탁송운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9조, 제23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요청한 목적에 반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현저히 벗어나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 대리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손해

④ 대리운전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손해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⑧ 단기 운전자확대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운전자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고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

약에 적용되는 다른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책임기간**

이 특별약관에 의한 회사의 책임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시작되어 마지막날 24시에 끝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Ⅱ. 보험료 할인

### [9]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 정보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 또는 자동차제조사에 통보하는 장치(이하 '사고통보장치'라 함)가 장착되고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용어정의> ②에서 규정하는 기능이 상시 작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된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회사가 사고통보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 '3.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고통보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① 차량 출고 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된 장치(휴대전화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장치는 해당되지 않음)

② 피보험자동차의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아래의 기능이 상시 작동되어 제휴 자동차제조사로 송신·수집되며, 자동차제조사와의 무선통신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임의로 작동을 중지할 수 없는 장치

가.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 발생 시 자동송신 기능

나. 차량운행정보(운행시간, 운행속도 등) 저장 등

③ 피보험자동차의 에어백이 전개되는 사고발생 정보가 자동차제조사 또는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됨으로서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할 것

**2. 회사의 사고 및 긴급상황 확인 및 조치**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에어백 전개사고 정보를 자동차제조사로부터 받은 경우 자동으로 사고접수를 하고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드립니다. 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하거나 자동차제조사가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위 '1. 가입대상'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합니다.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통보장치가 상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통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 중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자동차제조사에 수집된 사고당시 차량운행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위 '1. 가입대상'의 '(2)'에 해당하는 경우

(2)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통보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3)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와 관련된 차량운행정보의 확인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6.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3.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7. 보험금 공제 지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4' 내지 '6'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⑩ Hicar Green 서비스(전자약관 등)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가 계약자료를 인쇄물(종이)이 아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받음으로써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상품입니다.

**1. 적용 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지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료를 수령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전자적 방법'이라 함은 다음의 방법을 말합니다.

1. 전자우편(E-mail)
2.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메신저 등의 메시지 서비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계약 자료'라 함은 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 보험약관, 만기·분납보험료 안내문 등을 말합니다.

**2.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지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 자료를 수령 할 전자우편(E-mail) 주소 또는 휴대전화 번호 등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알려야 합 니다.

(2) 위 '(1)'에서 알려준 정보가 변동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회사는 알고 있는 최근의 정보로 보험계약 자료를 송부하기 때문에 위 '(1)' 또는 '(2)'에서 알린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 자료의 교부**

(1) 회사는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 자료를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2) 회사는 보험만료일 이전 2회에 걸쳐 만기안내문을 지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며, 교부한 만기안내문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교부합니다.

(3)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사항 변경 등의 이유로 보험계약 자료의 재교부를 요청할 때에는 지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보험계약 자료를 재교부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계약자 및 회사의 권리와 의무**

이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기간에 각종 보험계약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령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 ⅱ 스마트 안전운전(UBI)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개인소유 경·3종 승합자동차,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자동차제조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생성한 안전운전점수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② 기명피보험자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함)에 회사가 인정하는 안전운전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안전운전점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2)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단말기 및 안전운전점수가 아닌 경우

②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된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 회사와 제휴한 안전운전점수 제공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회사가 인정하는 점수가 없거나, 시스템 오류로 안전운전점수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점수"라 함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점수를 말합니다.

1. 자동차제조사 제공 시 : 안전운전점수 확인일 직전 90일 이내 1,000km 이상 주행한 경우

2. 안전운전프로그램 운영회사 제공 시 : 안전운전점수 확인일 직전 6개월 이내 500km 이상 주행한 경우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안전운전프로그램"은 단말기 등에서 구현되는 안전운전 관련 프로그램으로 특별약관 가입시점에 회사가 인정하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이 특별약관은 가입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안전운전점수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본인인증 포함) 동의를 하는 등 위 '1. 가입대상'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합니다.

**3. 보험료 할인**

회사는 확인된 안전운전점수가 회사가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다만, 안전운전점수가 <용어정의 ①>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하되, 중복하여 할인해 드리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1) 회사가 확인한 안전운전점수가 피보험자동차 운행기록에 근거한 점수가 아닌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 본인의 안전운전점수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2) 위 '(1)' 의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2)'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⑫ 효도하는 자녀(만 12세 이하)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개인소유 경·3종 승합자동차, 초소형·경·4종화

물자동차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만 12세 이하인 경우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태아를 임신한 경우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법률상의 혼인관계로 인한 계자녀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2.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위 '1. 가입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 등) 단,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계약 등을 통해 '1. 가입대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할인**

(1)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시기

① 위 '2' 서류를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전에 제출한 경우 :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첫날

② 위 '2' 서류를 보험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후에 제출한 경우

가. 임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임신확인일

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을 통해 보험기간 중 자녀를 출산했거나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을 기준으로 자녀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첫날로 소급하여 이 특별약관을 적용

(2)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동안의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해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⑬ 나눔(서민우대)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2)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연령 만30세 이상

②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4천만원 이하

③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한 배기량 1,600cc이하 승용차 또는 1.5톤이하 화물자동차 1대만 소유

④ 만 20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단,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며,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④'의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된 장애인등록증의 경우는 1~3급 장애인)으로서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①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4천만원 이하

② 최초 신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1대만 소유

(4)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연 합산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피보험자동차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경우

**2.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위 '1. 가입대상'의 '(1)'의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 위 '1. 가입대상'의 '(2)'의 경우

①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아래의 소득입증 서류. 단, 기명피보험자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나. 사업소득자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단 사업소득자 중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수입증명원

다. 사업등록이 안된 인적용역제공자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라.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서

마. 그 밖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예 :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기명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서류)

② 부양가족이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③ 차량등록증

④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위 '1. 가입대상'의 '(3)'의 경우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단, 갱신계약으로 최근 2년이내 서류를 제출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기명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주민등록등본

③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위 '(2). ①'의 서류

(4) 위 '1. 가입대상'의 '(4)'의 경우

①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되어 출고되거나 구조변경된 차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②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위 '(2). ①'의 서류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⑭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

약관」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만65세 이상

(2)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3) 위 '(2)'의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최종판정이 운전능력진단 1~3등급인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결과지의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인 경우. 단,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교육이수일자 또는 온라인 교육 수료일자로부터 보통약관을 가입하는 날까지의 경과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경우로 한합니다.

**2.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1. 가입대상'의 '(2)', '(3)'의 조건이 만족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할인**

(1)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시기

①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교육 이수일자가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전인 경우 :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첫날

②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교육 이수일자가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확인증의 교육 이수일

(2)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가입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시점과 동일하게 종료됩니다.

(3)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기간 동안의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해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15 첨단안전장치 장착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 최초 출고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첨단안전장치 적용 대상**

이 특별약관에서 인정하는 첨단안전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 탑재되거나 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포함된 경우, 출고 이후 사후적으로 장착된 경우는 이 특별약관의 첨단안전장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인 경우

① 차선이탈 경고장치

② 전방충돌 경고장치

③ 후측방충돌 경고장치

④ HUD(Head Up Display)

⑤ AVM(Around View Monitor)

(2) 피보험자동차가 승합·화물자동차인 경우

① 차선이탈 경고장치

② 전방충돌 경고장치

③ 후측방충돌 경고장치

④ AVM(Around View Monitor)

**3. 보험료 할인**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된 첨단안전장치가 1개 이상인 경우 첨단안전장치 장착 개수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4.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위 '2. 첨단안전장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 및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 동의를 통해 차량제조사로부터 해당 장치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첨단안전장치가 상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첨단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 중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위 '(1)'에서 정한 사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첨단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7.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4.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보험금 공제 지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5' 내지 '7'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 표> 첨단안전장치 용어 정의**

**① '차선이탈 경고장치'**

피보험자동차가 차선 이탈시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차선이탈 경고장치(LDWS*) 또는 차선 이탈시 핸들을 조향하여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차선유지 지원장치(LKAS**)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6의 29 '차로이탈경고장치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기를 말합니다.

**② '전방충돌 경고장치'**

피보험자동차가 전방에 주행 중인 차량과의 거리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전방충돌 경고장치(FCW*) 또는 장애물과 충돌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차량이 자동으로 제동하는 자동 비상 제동장치(AEB**)를 말합니다.

**③ '후측방충돌 경고장치'**

피보험자동차가 후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후측방 충돌 경고장치(BSD*) 또는 후측방 차량과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차량을 제어하여 충돌 회피를 도와주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장치(BCA**)를 말합니다.

**④ 'HUD(Head Up Display)'**

피보험자동차 운전석 앞 유리창에 내비게이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여 정면을 상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⑤ 'AVM(Around View Monitor)'**

피보험자동차의 외부(전, 후, 좌, 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위 360도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보여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16 친환경 에코부품 사용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최초등록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법인소유 승용, 경·3종승합 또는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로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 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

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신부품이 아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친환경 에코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하여 드립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친환경 에코부품'이라 함은 협약서 체결을 통해 보험개발원장이 인정한 업체가 제공하는 다음의 중고부품 또는 재제조 부품을 말합니다.

| 구 분 | 대상부품 |
|---|---|
| 중고부품 | 사이드미러, 프론트휀다, 본네트, 라디에이터그릴, 프론트도어, 리어도어, 트렁크패널, 프론트범퍼, 리어범퍼, 백도어, 리어피니셔, 쿨러콘덴서, 테일램프, 헤드램프, 안개등, 룸미러(하이패스 기능), 전후방센서 |
| 재제조부품 |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부품 |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마련한 '친환경 에코부품 사용약정서'를 체결하고, 위 '2. 보상하는 손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위 '(1)'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친환경 에코부품 이외 부품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한 경우 회사는 친환경 에코부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친환경 에코부품 제공이 안 되는 경우**

회사는 위 '2. 보상하는 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에코부품의 재고가 없거나 배송처가 도서·산간 지역으로 배송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부품을 사용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⑰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법인소유 승용자동차이며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일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된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회사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특별약관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라 함은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영상정보 등을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차량에 고정 장착된 전용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및 테블릿 PC 등에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 시 회사가 요구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정보(부속품가액 등)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차량용 영상기록장치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장치가 차량 출고시 자동차제조사의 표준장치 또는 옵션으로 장착되어 회사가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영상기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피보험자동차에 상시 고정 장착해 놓고 작동시켜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용 영상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 중 경과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사고와 관련된 영상기록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차량용 영상기록장치의 파손, 고장에 따른 수리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교체한 영상기록장치의 정보를 위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 위 ‘1.가입대상’의 ‘(2)’에 해당하는 경우

(2)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용 영상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3)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와 관련된 영상기록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5.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2. 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6. 보험금 공제 지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 '3' 내지 '5'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⑱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Ⅰ(계기판 사진전송 방식)

이 특별약관은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Ⅱ(커넥티드 방식)'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1.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개인소유 경·4종·초소형화물 자동차 및 경·3종승합자동차 이면서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유지 중인 자동차보험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 또는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Ⅱ(커넥티드 방식)'을 해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계 조작, 주행거리 촬영사진 위변조 등을 통해 부당하게 보험료를 할인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이 특별약관 '7. 보험료 정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책임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 정보의 촬영사진과 이를 확인한 날짜를 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책임개시일 이후 30일 이내에 직전 계약에서 마일리지 특별약관 정산이 완료된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 45일부터 이 특별약관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4) 위 '(3)'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회사와 맺은 직후 계약에서 마일리지 등록에 사용된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 이전 7일부터 교체된 날 이후 7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교체 전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 및 교체 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6)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 은행계좌번호 정보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3. 회사의 주행거리 정보 등 확인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간 주행거리 15,000km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간 주행거리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1)' 또는 '(5)'의 규정에 따라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기한 내 송부하지 않았거나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최초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 5.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1. 가입대상'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6. 연간 주행거리의 산출

연간 주행거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 정보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 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및 경과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연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 365

1) 일평균 주행거리 : (최종 주행거리 - 최초 주행거리) ÷ 경과기간

2) 경과기간 : 최초 주행거리 확인일부터 최종 주행거리 확인일까지의 기간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주행거리 확인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촬영한 날짜 또는 회사가 정하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 7. 보험료 정산

회사는 이 특별약관 '6. 연간 주행거리의 산출'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받은 날 또는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최종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된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회사가 확인한 경우에는 보

험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 연간 주행거리 | 적용보험료의 |
|---|---|
| 15,000Km초과 | 0% |
| 10,000Km초과 15,000Km이하 | 보험증권에 기재된<br>각 구간별 정산율 |
| 5,000Km초과 10,000Km이하 | |
| 3,000Km초과 5,000Km이하 | |
| 3,000Km이하 | |

주) 보험료 정산시 하이카서비스 특약(또는 하이카서비스 특약 (친환경자동차) 보험료 제외

## ⑲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Ⅱ (커넥티드 방식)

이 특별약관은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Ⅰ (계기판 사진전송 방식)'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운전교습용,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용 제외),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 및 경·3종승합자동차인 경우

② 「커넥티드카 할인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자동차제조사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③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

단, 기존 유지 중인 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 또는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Ⅰ(계기판 사진전송방식)'을 해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계 조작, 주행거리 촬영사진 위변조 등을 통해 부당하게 보험료를 할인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이 특별약관 '7. 보험료 정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무선통신 서비스 해지 등의 사유

로 자동차제조사로부터 주행거리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 소급하여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I (계기판 사진전송 방식) '7. 보험료 정산'의' (2) 후환급형」으로 전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본인인증 포함) 동의를 하는 등 위 '1. 가입대상' 확인을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행거리정보가 상시 정상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무선 통신 서비스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만료일 이전 45일부터 이 특별약관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4)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 이전 7일부터 교체된 날 이후 7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교체 전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 및 교체 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5)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정산을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정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 은행계좌번호 정보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 회사의 주행거리정보 등 확인**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 받은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간 주행거리 15,000km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간 주행거리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1)' 또는 '(4)'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주행거리정보를 기한 내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5. 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1. 가입대상'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연간 주행거리의 산출**

연간 주행거리는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규정에 따라 제공 받은 운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보험기간 첫날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기준으로 연간 주행거리를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 전 피보험자동차와 교체 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및 경과기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연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 365

1) 일평균 주행거리 : (최종 주행거리 - 최초 주행거리) ÷ 경과기간

2) 경과기간 : 최초 주행거리 확인일부터 최종 주행거리 확인일까지의 기간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주행거리 확인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를 촬영한 날짜 또는 회사가 정하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7. 보험료 정산**

회사는 이 특별약관 '6. 연간 주행거리의 산출'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금액을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 표> 보험료 정산금액

| 연간 주행거리 | 적용보험료의 |
|---|---|
| 15,000Km초과 | 0% |
| 10,000Km초과 15,000Km이하 | 보험증권에 기재된 각 구간별 정산율 |
| 5,000Km초과 10,000Km이하 | |
| 3,000Km초과 5,000Km이하 | |
| 3,000Km이하 | |

주) 보험료 정산시 하이카서비스 특약(또는 하이카서비스 특약(친환경자동차)) 보험료 제외

**[20] 어린이 통학버스 할인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한 어린이통학버스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1. 가입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교부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어린이통학버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할인**

(1)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시기

①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교부일이 보통약관 보험기간 첫날 이전

인 경우 : 보통약관의 보험기간 첫날

②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교부일이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교부일

(2)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동안의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해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 · 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 · 군 · 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 Ⅲ. 보장 확대

### ⑵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의 대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②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지급보험금 | = | 실제손해액 | + | 비용 | - | 공제액 |
|---|---|---|---|---|---|---|

① 실제손해액은 '<별표1~5>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으로써 <별표 4>의 1.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②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음

다. 배상의무자 또는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이 경우 관련 내용(업무상 재해 등)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위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하여 지급합니다.

(4)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1)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7조 「대인배상 Ⅱ」의 피보험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② 위 '①'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임직원으로 사고발생시점 현재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제공의 대가를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사람은 피보험자로 간주합니다.

###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22 상해간병비·사망담보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②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후유장애 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사망·후유장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단,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애 위로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구 분 | 사망 위로금 | 장애등급별 후유장애 위로금 | | |
|---|---|---|---|---|
| | | 1~3급 | 4~7급 | 8~10급 |
| 지급보험금 | 3,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장애구분에 의함

② 상해간병비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0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1사고당 아래와 같이 상해간병비를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의 상해구분 | 1급 | 2급 | 3급 | 4~5급 | 6~7급 | 8~10급 |
|---|---|---|---|---|---|---|
| 지급보험금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図 상급병실·성형·치아보철 지원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②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급병실료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상급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을 30일을 한도로 1사고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동차 및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보통약관 규정에 따라 병실료 차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병실'이라 함은 기준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 (특실 포함)을 말합니다.

② 성형비용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부분에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형 부위 1cm당 10만원을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1천만원을 한도로 성형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③ 치아보철비용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치아보철이 필요한 경우에는 1사고 1대당 20만원의 치아보철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기 전에 이미 보철을 하고 있었던 경우(틀니 포함)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24 자녀(만18세 이하) 사고 피해 지원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을 가입하고,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②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③ 보행중 등의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행중 등'이라 함은 교통 승용구의 운전 중 또는 탑승중(자동차 및 그 부속장치 등에 매달려 있는 상태 등을 포함)이 아닌 상태를 말합니다. 이 때의 교통 승용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기차․전동차․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를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나.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다.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2)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후유장애 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사망·후유장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단,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애 위로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구 분 | 사망 위로금 | 장애등급별 후유장애 위로금 | | |
|---|---|---|---|---|
| | | 1~3급 | 4~7급 | 8~10급 |
| 지급보험금 | 3,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장애구분에 의함

② 자녀간병비 지원금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0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1사고당 아래와 같이 자녀간병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의 상해구분 | 상해등급 | | | | | |
|---|---|---|---|---|---|---|
| | 1급 | 2급 | 3급 | 4~5급 | 6~7급 | 8~10급 |
| 지급보험금 | 5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③ 성장판 관련 골절치료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 손상을 입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이 이 특별약관의 '<별표> 성장판과 관련된 상해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1사고 피보험자 1

인당 500만원의 성장판 관련 골절치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④ 스쿨존(School Zone) 사고 피해 지원금

피보험자가 스쿨존(School Zone)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위 '①'의 사망·후유장애 위로금의 2배를 적용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①'의 사망·후유장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스쿨존(School Zone) 사고"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해당 사고의 관할 경찰관서에서 이를 증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이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만 18세 이하 자녀를 말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 날 현재 만 18세 이하의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성장판과 관련된 상해 내용**

| 상해급별 | 상해 내용 |
|---|---|
| 2급 |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
| |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3급 |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
| |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4급 | 8. 상완골 경부 골절 |
| |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 |
| |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
| |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 |

| | |
|---|---|
| | 을 말한다) |
| |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5급 |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
| |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
| 6급 |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
| |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
| | 18. 요골 경부 골절 |
| | 19. 척골 주두부 골절 |
| 7급 |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
| |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

### 図 음주·무면허·뺑소니사고 등 피해 지원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마약·약물운전사고로 죽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해당 사고의 관할 경찰관서에서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 1인당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사망위로금 및 장애등급별 후유장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단,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애 위로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구 분 | 사망 위로금 | 장애등급별 후유장애 위로금 | | |
|---|---|---|---|---|
| | | 1~3급 | 4~7급 | 8~10급 |
| 지급보험금 | 3,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장애구분에 의함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마약·약물운전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후유장애가 남도록 한 자동차의 운전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4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다. 뺑소니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고(피보험자를 죽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모두가 도주한 경우를 말함)

라. 마약·약물운전사고 :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② 위 '①'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손해

②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한 손해

③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인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

(3) 위 '(2)'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를 죽게 한 자동차를 위 '(2)'의 '①'에 해당하는 자가 운전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 임직원 사고 보상 확대 특약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이면서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②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후유장애 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 1인당 사망·후유장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단,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한 후유장애 위로금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구 분 | 사망 위로금 | 장애등급별 후유장애 위로금 | | |
|---|---|---|---|---|
| | | 1~3급 | 4~7급 | 8~10급 |
| 지급보험금 | 1억원 | 1억원 | 5,000만원 | 3,000만원 |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장애구분에 의함

② 상해간병 지원금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0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1사고당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 1인당 상해간병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의 상해구분 | 상해등급 | | | | | |
|---|---|---|---|---|---|---|
| | 1급 | 2급 | 3급 | 4~5급 | 6~7급 | 8~10급 |
| 지급보험금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60만원 | 20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임직원. 그러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지 않은 무단운전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2) 기명피보험자 및 위 '(1)'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그러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발생시점 현재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제공의 대가를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지급 받는 사람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27 임직원 치료비 지원 담보 특약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법인이면서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또는「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②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급병실료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상급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을 30일을 한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동차 및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보통약관 규정에 따라 병실료 차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상급병실'이라 함은 기준 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 (특실 포함)을 말합니다.

② 성형비용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부분에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형 부위 1cm당 10만원을 1회에 한하여 1천만원을 한도로 성형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③ 치아보철비용 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치아보철이 필요한 경우에는 1대당 20만원의 치아보철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기 전에 이미 보철을 하고 있었던 경우(틀니 포함)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임직원. 그러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지 않은 무단운전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2) 기명피보험자 및 위 '(1)'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그러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발생시점 현재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제공의 대가를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지급 받는 사람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2. 차량 손해

### ㉘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제②항에서 규정하는 사고 이외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

통약관「자기차량손해」제21조(보상하는 손해)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며,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1)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타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단, 「자기차량손해」제21조(보상하는 손해)의 '타차'는 제외),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에는 타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제13호는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자기차량손해」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나.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 5.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은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규정에 따릅니다.

### 6. 보험금의 분담 및 보험회사의 대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 따라 보험금이 지급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통약관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및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㉘ 렌트비용지원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 경·3종 승합자동차, 초소형·경·4종 화물자동차로서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지급하는 렌트비용 보험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정기준액

가. 대차를 하는 경우

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아래의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내에서 지급합니다.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

(단위 : 원)

| 구분 | (초)소형승용 (배기량 1,600cc이하) | 중형승용 (배기량 2,000cc이하) | 대형승용 (배기량 2,800cc이하) | 대형승용 (배기량 2,800cc초과) | 다인승승용 (법정승차정원 7~10인) | 기 타 |
|---|---|---|---|---|---|---|
| 한도 | 70,000 | 110,000 | 210,000 | 350,000 | 140,000 | 110,000 |

ㄴ) 회사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국내산 대여자동차를 직접 제공 가능

나.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와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다만, 1일 지급한도는 1일당 차종별 렌트비용 한도금액의 35%로 합니다.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동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② 인정기간

ㄱ) 수리 가능한 경우

30일을 한도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함.
단, 외산차의 경우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합의지연, 부당한 수리지연 등 미수리로 연장되는 기간은 제외

ㄴ)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ㄷ)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30일. 단,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

② 차량운반비용 보험금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영수

증 등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그 밖에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다음의 필요 타당한 비용을 20만원 한도로 지급

가.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피보험자동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에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나. 사고발생시 근처의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종료한 후 피보험자의 주소지 근처의 회사가 인정한 장소까지 견인차 등에 의해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3) 회사가 보상할 위 '(2)'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보통약관(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의 대차료 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① 렌트자동차 손해담보 추가특별약관

### 1. 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렌트비용지원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 2.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특별약관 규정에 따라 렌트를 한 경우에 한하여, 렌트한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렌트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피보험자가 운전한 해당 렌트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 '(1)'의 렌트자동차의 사고는 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렌트비용 인정기간 중의 사고로 대여사업자로부터 렌트자동차를 인도받은 때부터 렌트비용 인정기간 말일의 24시를 한도로 렌트한 자동차를 반납한 때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그러나 렌트비용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3)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 중 렌트자동차의 차량손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의「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렌트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렌트자동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사고 직전의 상태로 고치는데 드는 수리비 및 교환가액만을 보상합니다.

(4) 회사가 보상할 위 '(1)' 및 '(3)'의 손해에 대하여 렌트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

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1)' 및 '(3)'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렌트한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합니다.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교환가액'이라 함은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 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을 말합니다.

### 3. 보험계약의 종료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발생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의 24시에 종료됩니다.

###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 ㉚ 차량운반비용담보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 경·3종 승합자동차, 초소형·경·4종 화물자동차로서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표준계산서) 등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그 밖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다음의 필요 타당한 비용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 사고 발생시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피보험자동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에 운반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중에서 '하이카서비스특별약관' 중 견인서비스 및 '견인 확장 추가 특별약관'을 이용시 지원되는 서비스 초과구간에 대한 비용. 단, '하이카 서비스특별약관' 중 견인서비스 및 '견인 확장추가 특별약관'을 이용 안 한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에 운반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

나. 수리를 종료한 후 피보험자의 요청으로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자가용 제외)가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여 피보험자의 주소지 또는 회사가 인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된 비용. 이 경우 관련 내용 확인을 위해 구난형특수자동차 운송사업자(자가용 제외)가 발급한 견인영수증(표준계산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어 풀이>
① 피보험자동차가 '사고발생시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함은 사고발생으로 동력발생장치, 동력전달장치, 서스펜션, 스티어링 및 브레이크 이상으로 주행이 불가한 경우

(2)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3)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를 지급합니다.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보통약관(대물배상 보험금지급기준의 대차료 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31] 신차손해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승용자동차, 경·3종 승합 또는 초소형·경·3종·4종 화물자동차로서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가입한 자동차

(2) 최초등록일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동차(이하 '신차'라 함)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최초등록일'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로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동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에는 말소등록 이전에 최초로 신규 등록한 일자를 말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인 경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차가액 보험금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이거나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인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

| 보험가입금액 | -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

②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

신차가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실제로 차량을 교환할 때(피보험자동차를 고치는 때에는 보상하지 않음) 소요된 취·등록세 지급. 취·등록세가 지급되는 경우 신규차량 등록시 발생되는 부대비용 20만원을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지급.

③ 수리 시 제비용 보험금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의 10% 지급

(3) 손해액의 산정은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회사가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신차손해담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은 사고발생시에 종료합니다.

(5) 회사가 '신차가액 보험금' 및 '대체차량 등록비용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 ㉒ 전손 시 대체차량 등록비용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신차손해담보 특별약관」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 경·3종 승합자동차, 초소형·경·4종 화물자동차로서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 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를 한도로 실제로 차량을 교환할 때 소요된 취·등록세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위 '(1)'의 취·등록세가 지급되는 경우 신규차량 등록시 발생되는 부대비용 20만원을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3) 회사가 위 '(1)'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은 사고발생시에 종료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3. 법률비용 / 다른 자동차 운전

### ⟦33⟧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매 사고마다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① 형사합의금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보험자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단, 한 사고가 ① 과 ② 또는 ② 와 ③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며,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실제 공탁금액을 보상한도액에서 지급하고, 향후 피보험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형사합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br>①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사망하게 한 사고<br>②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단, 이 단서 중 7 내지 8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br>③ 위 '②' 이외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중상해를 입혀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거나 검찰이 공소제기한 사고<br>(2)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br>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br>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br>(3) 위 '(1)', '(2)'의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구분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br>① 위 '(1)'의 ①, ②의 경우 |

| 피해자의 상해구분 | 사 망 | 상해 등급 1급 | 상해 등급 2급 ~3급 | 상해 등급 4급 ~5급 | 상해 등급 6급 ~7급 | 상해 등급 8급 ~14급 |
|---|---|---|---|---|---|---|
| 기본형 | 3,000 만원 | 2,000 만원 | 1,000 만원 | 500 만원 | 300 만원 | - |
| 고급형 | 3,000 만원 | 3,000 만원 | 2,000 만원 | 700 만원 | 500 만원 | - |
| 최고급형 | 3,000 만원 | 3,000 만원 | 3,000 만원 | 700 만원 | 500 만원 | 100 만원 |
| 최고급형 II | 5,000 만원 | 5,000 만원 | 5,000 만원 | 1,000 만원 | 700 만원 | 200 만원 |
| 최고급형 III | 20,00 0만원 | 20,00 0만원 | 15,00 0만원 | 8,000 만원 | 2,000 만원 | 2,000 만원 |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② 위 '(1)'의 ③의 경우 : 3천만원

(4) 한 번의 사고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피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 및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변호사 선임비용**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변호사선임 비용을 실제로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단, 약식기소 제외)

② 검사가 약식기소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동법 제453조에 의거 정식재판이 청구되는 경우

| 구 분 | 변호사선임비용 |
|---|---|
| 기본형 / 고보장형 / 최고급형 / 최고급형II | 500만원 |
| 최고급형III | 5,000만원 |

(2) 위 '(1)'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벌금비용**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벌금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보상하는 벌금비용은 매 사고마다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2,0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액을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

제계약 포함)이 있는 경우에,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대인배상Ⅱ」에서의 피보험자 중 해당 사고 발생당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⑥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에 생긴 손해

(3) 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도주를 원인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② 운전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③ 승낙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5.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위 '2. 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형사합의금

가.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나.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

금액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함)

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라. 공탁확인서(단, 공탁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및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② 변호사 선임비용

가.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③ 벌금비용

가. 확정판결 증명서 (단, 약식기소된 경우 약식명령서 및 벌금납입 영수증)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④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위 '2. 보상하는 손해 (2)의 ①의 (2)'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②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③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④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그 밖에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① 변호사 선임비용 제외 추가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 '2. 보상하는손해 (2)의 ②'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벌금비용 제외 추가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 '2. 보상하는손해 (2)의 ③'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34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승합자동차,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

를 운전 중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통약관「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통약관「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 소유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대물배상」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회사는 위 '(3)'의 손해에 대하여 매 사고마다 지급하는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3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다른 자동차 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사고 당시 다른 자동차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5) 다른 자동차 또는 타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정부보장사업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①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및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봄)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나.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다.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② 이 특별약관에서 '타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전기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및 농업기 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위 '2. 보상하는 손해 (1) 및 (2)'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⑤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⑦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2) 회사는 위 '2. 보상하는 손해 (3)' 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단, 제8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위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에서 정하는 손해. 단, '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이 경우 보통약관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규정의 사고부담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3)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① 자녀 운전담보 추가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가입자로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면서, 피보험자동차가 경·3종승합자동차,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2. 보상하는 손해' (1) 내지 (3)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이하 '자녀'라 함)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아래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①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②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자녀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③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 자녀의 배우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

<용어정의>

①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를 말합니다.

②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자녀의 배우자'라 함은 자녀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자녀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4. 전기자동차**

| |
|---|
| 이 보험약관에서 '전기자동차'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

## ㉳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의 구동배터리가 파손되어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새 부분품을 포함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새 부분품의 가액 | − | 감가상각 적용 후 새 부분품 가액 |
|---|---|---|

| |
|---|
| <용어 정의><br>이 특별약관에서 '구동배터리'라 함은 전기자동차에 장착되어 구동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배터리를 말합니다. |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㊱ 전기자동차 충전 중 위험 보장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서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가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정격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이용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충전하던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에 대하여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동차의 화재 또는 폭발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② 피보험자가 감전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③ 피보험자동차의 중요한 부분의 전기적 손해

<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라 함은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함은 전기자동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㊲ 전기자동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약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전기자동차로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가입하면서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책임개시일의 보험가액과 동일하게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품가액 지원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실제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130%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Ⅳ. 기타

### 1. 긴급출동 서비스

### ㊳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다음에 열거된 자동차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소유 승용자동차

(2) 경·3종 승합자동차, 초소형화물, 경화물, 1톤이하 화물자동차

(3) 1.4톤 이하 3종 화물자동차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별표〉 '하이카서비스'의 내용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견인차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비포장 산간지역, 해안가 모래사장, 갯벌, 늪, 진흙지대 등), 도서·산간지역인 경우와 그 밖에 회사가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 음주,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서비스 제공의 제한**

회사는 〈별표〉 '하이카서비스'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6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회,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서비스가 한번이라도 제공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7. 특별약관 가입의 제한**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등 고려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조작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하이카서비스**

| | |
|---|---|
| 배터리 방전시 시동서비스 | 1. 피보험자동차 배터리(차량 Key 배터리, 연료전지 등은 해당되지 않음)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br>2. 피보험자 요청에 따라 배터리를 교환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 견인 서비스 | 1.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곳까지 10km를 |

| | |
|---|---|
| |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동차가 입고된 정비업체의 사정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 1회에 한하여 견인하여 드립니다. (회당 10km 초과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br>2. 4륜차량 타이어의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타이어 펑크수리 및 교체 서비스 | 1. 피보험자동차 지면에 닿는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의 구멍이 뚫린 단순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펑크를 수리하여 드리며,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단, 야간, 기상상황 등으로 인해 펑크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특수장비가 필요한 타이어의 경우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br>2. 타이어 펑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하거나 피보험자의 요청시 공기주입하여 드립니다. 단,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 당시의 휠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휠의 교체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 1. 피보험자동차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는 제외) 단,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br>2. 외산차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br>3.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 구난 서비스 | 1. 피보험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br>2.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구난에 소요되는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br><용어정의><br>(1) 이 특별약관에서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① 적재정량 2.5톤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③ 셰이프티 로더 등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br>(2) 이 특별약관에서 '구난에 소요되는 시간'이라 함은 구난작업이 시작된 후 구난자동차의 연결고리를 피보험자동차에 연결하기 바로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합니다. |
| 비상급유 서비스 | 피보험자동차의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기간 중 2회, 1일당 1회에 한하여 3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드립니다. (휘발유 및 경유에 한하며 3리터 초과비용은 피보험자 부담) |
| 휴즈교환 서비스 | 피보험자동차의 휴즈 단락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새 휴즈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엔진룸 릴레이박스의 휴즈 교환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 Road 차량진단 서비스 | 1. 피보험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점등되거나 불명확한 원인으로 시동이 불가하여 차량진단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휴대용 진단기기를 활용하여 차량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드립니다.<br>2. 자동차제조사의 진단코드 미제공 등으로 상기의 차량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차량진단 후 피보험자가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 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br>3. 차량진단 서비스가 불가한 외산차 및 OBD-Ⅱ 시스템 미장착 차량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① 견인 서비스 확장 추가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특별약관의 『견인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 | |
|---|---|
| 긴급 견인 서비스 | 1.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곳까지 총 6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60km 초과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br>2. 4륜차량 타이어의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 ㉚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중형 화물·승합)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다음에 열거된 자동차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2·3종 화물자동차(1.4톤 초과)

(2) 2종 승합차

(3) '기중기장치 자동차요율'·'특수 적재장치 자동차요율'이 적용되는 경4종 화물자동차

(4) 구조변경, 크기 또는 무게로 인하여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 가입이 제한되는 3종 승합자동차, 경·3·4종 화물자동차(1.4톤 이하)

(5) 특정용도자동차 및 캠핑카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별표〉 '하이카서비스'의 내용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견인차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비포장 산간지역, 해안가 모래사장, 갯벌, 늪, 진흙지대 등), 도서·산간지역인 경우와 그 밖에 회사가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 음주,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5. 서비스 제공의 제한

회사는 <별표> '하이카서비스의 내용'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6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회,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서비스가 한번이라도 제공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하이카서비스의 내용**

| | |
|---|---|
| 배터리 방전시 시동서비스 | 1. 피보험자동차 배터리(차량 Key 배터리, 연료전지 등은 해당되지 않음)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br>2. 피보험자 요청에 따라 배터리를 교환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 1. 피보험자동차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는 제외) 단,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br>2. 외산차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br>3.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 비상급유 서비스 | 피보험자동차의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기간 중 2회, 1일당 1회에 한하여 5리터를 한도로 비상급유를 하여드립니다. (휘발유 및 경유에 한하며, 5리터 초과비용은 피보험자 부담) |

## ① 견인 서비스 추가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 중량을 기준으로 회사가 인정한 다음의 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2·3종 화물자동차(1.4톤 초과)

단, 구조변경, 크기 또는 무게로 인하여 '기중기장치 자동차요율' · '특수적재장치 자동차요율'이 적용되는 2·3종 화물자동차는 가입 불가

(2) 2종 승합차

(3) '기중기장치 자동차요율'·' 특수적재장치 자동차요율'이 적용되는 경·3·4종 화물자동차(1.4톤 이하)

(4) 구조변경, 크기 또는 무게로 인하여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 가입이 제한되는 3종 승합자동차, 경·3·4종 화물자동차(1.4톤 이하)

(5) 회사가 인정하는 특정용도자동차 및 캠핑카

### 2.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곳까지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동차가 입고된 정비업체의 사정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 1회에 한하여 견인하여 드립니다. (회당 10km 초과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 ② 타이어교체 및 펑크수리 서비스 추가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다음의 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중기장치 자동차요율' · '특수적재장치 자동차요율'이 적용되는 경·4종 화물자동차

(2) 구조변경, 크기 또는 무게로 인하여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 가입이 제한되는 3종 승합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

**2. 보상하는 손해**

(1) 피보험자동차 지면에 닿는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의 구멍이 뚫린 단순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펑크를 수리하여 드리며,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단, 야간, 기상상황 등으로 인해 펑크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특수장비가 필요한 타이어의 경우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타이어 펑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하거나 피보험자의 요청시 공기주입하여 드립니다. 단,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 당시의 휠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휠의 교체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 ㊵ 하이카서비스 특별약관 (친환경자동차)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친환경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친환경자동차'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별표〉 '하이카서비스'의 내용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견인차가 접근이 어려운 지역(비포장 산간지역, 해안가 모래사

장, 갯벌, 늪, 진흙지대 등), 도서·산간지역인 경우와 그 밖에 회사가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 음주,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서비스 제공의 제한**

회사는 〈별표〉 '하이카서비스'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 6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1회,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6. 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서비스가 한번이라도 제공된 경우에는 특약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하이카서비스**

| | |
|---|---|
| 자동차 방전시 응급지원 서비스 | 1. 피보험자동차 고전압배터리(리튬이온전지 등) 방전(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수소 연료 소진시를 말함)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가능거리가 10km 이내인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충전기가 설치된 가장 가까운 장소까지 10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100km 초과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br>2. 피보험자동차 시동용(점프)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 요청에 따라 배터리를 교환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 견인 서비스 | 1.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곳까지 10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피보험자동차가 입고된 정비업체의 사정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 1회에 한하여 견인하여 드립니다.<br>(회당 100km 초과하는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피보험자 부담)<br>2. 4륜차량 타이어의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타이어 펑크수리 및 교체 서비스 | 1. 피보험자동차 지면에 닿는 타이어트레드 부분(접지면)의 구멍이 뚫린 단순펑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펑크를 수리하여 드리며,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단, 야간, 기상상황 등으로 인해 펑크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거나 특수장비가 필요한 타이어의 경우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br>2. 타이어 펑크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하거나 피보험자의 요청시 공기주입하여 드립니다. 단, 자동차 제작사에서 출고 당시의 휠이 아닌 경우로서, 해당 휠의 교체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잠금장치 | 1. 피보험자동차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 |

| | |
|---|---|
| 해제 서비스 | 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트렁크 잠금장치는 제외) 단,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br>2. 외산차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br>3.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 구난 서비스 | 1. 피보험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구난하여 드립니다.<br>2.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구난에 소요되는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br><용어정의><br>(1) 이 특별약관에서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라 함은 ① 적재정량 2.5톤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③ 세이프티 로더 등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br>(2) 이 특별약관에서 '구난에 소요되는 시간'이라 함은 구난작업이 시작된 후 구난자동차의 연결고리를 피보험자동차에 연결하기 바로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합니다. |
| 휴즈교환 서비스 | 피보험자동차의 휴즈 단락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새 휴즈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단, 엔진룸 릴레이박스의 휴즈 교환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 Road 차량진단 서비스 | 1. 피보험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점등되거나 불명확한 원인으로 시동이 불가하여 차량진단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휴대용 진단기기를 활용하여 차량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드립니다.<br>2. 자동차제조사의 진단코드 미제공 등으로 상기의 차량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차량진단 후 피보험자가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 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br>3. 차량진단 서비스가 불가한 외산차 및 OBD-Ⅱ 시스템 미장착 차량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2. 보험료 납입

### 4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1.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함)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은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

####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위 '(1)'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1)' 및 '(2)'의 내용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4.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㊷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납입**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은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수 없습니다.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함)로 합니다.

(3) 위 '(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다가오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 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 납입되지 않습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1)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부터〈별표〉의 기간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

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위 '(1)'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4)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4.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4)'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 미납입보험료 / 납입방법 |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
| 비연속 2회납 | | | | | | 1개월 |
| 연속납 | 2회납 | 4개월 | | | | |
| | 3회납 | 2개월 | 4개월 | | | |
| | 4회납 | 1개월 | 3개월 | 4개월 | | |
| | 5회납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
| | 6회납 | 1개월 | 1개월 | 2개월 | 2개월 | 3개월 |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 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을 말합니다.

## ㊸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함)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함)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 '(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

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3. 기타**

## 44 전차량 일괄계약에 대한 자동담보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비사업용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를 전부 일괄하여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를 보험기간 중도에 취득(대차계약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임차한 자동차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그 자동차(이하 '중도취득자동차'라 하며 이하 같음)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이 보험계약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도취득자동차에 이미 체결된 유효한 다른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중도취득자동차로 봅니다.

**3.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보험기간**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계약자가 중도취득자동차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때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마지막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4. 차량변동현황의 통지**

보험계약자는 매월 10일(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기일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월분의 차량변동현황을 회사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중도취득자동차

(2) 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보험계약자가 이미 회사에 통지를 한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 또는 폐차한 때

**5. 자동차의 양도**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또는 중도취득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6. 적용배제**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음을 보험계약자가 입증한 때에는 특별약관 '2.'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 전부를 이 보험에 부보하지 않은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자동차

(2)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 '4.'에서 정한 통지의 지체 또는 누락이 있었던 경우, 그 지체 또는 누락된 자동차 및 그 사실이 판명된 이

후의 중도취득자동차

**7. 보험료의 정산**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4.'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중도취득자동차 또는 양도, 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의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이때의 보험료는 서로 상쇄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위 '(1)'의 보험료를 서로 상쇄하여도 보험계약자가 더 내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 '4.'에서 정한 통지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하 '납입일'이라 함)까지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위 '(2)'의 추가보험료를 납입일까지 회사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이후 중도취득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보상을 하지 않으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피보험자는 이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8. 특별약관의 해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 특별약관 '6.(1)'에 해당하는 경우

(2) 이 특별약관 '6.(2)'에 해당하는 경우

(3)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7.(2)'에서 정한 추가보험료의 납입을 태만히 한 경우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㊺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관용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보통약관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이 확정된 경우'로 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 대원(이하 '경찰·군인 등'이라 함)이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들에 대하여 보통약관 「대인배상 Ⅰ」 및 「대인배상 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제2편 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의 각 보장종목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한 사항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대체차량의 보험계약 승계**

피보험자동차를 대체하는 때에는 대체차량에 보험계약이 승계되며, 이 경우 적용하여야 할 보험료가 다를 때에는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의 차액을 추징 또는 반환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보통약관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 규정은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또는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으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로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① 도로주행시험용자동차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은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에 의해 가입한 자동차중 도로주행시험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3.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도로주행시험을 위해 운전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경찰·군인 등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 따릅니다.

## ㊻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규정에도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3.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①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②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③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 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④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위 '(1)'에 따라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 4.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3. 보상하는 손해'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수인은 위 '(1)'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㊼ 시험용 운행담보 특별약관

### 1. 가입제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고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8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8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포함)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보통약관의 해당 보장종목 및 특별약관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㊽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1.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6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49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중 어느 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동의하고, 피보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사망보험금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위 '(1)'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함)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에는 '(3)' 내지 '(4)'에서 정하는 각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정대리청구인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릅니다.

(4) 위 '(1)'에도 불구하고 '(3)'에서 정한 동일한 순위의 지정대리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의 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1인에 한하여 지정대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3.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취소

(1)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2.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1)'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취소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②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

### 4.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 등

(1)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② 지정대리청구인과 피보험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④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⑤ 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위 '2.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의 '(3)'에서 정한 동일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동의)을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⑥ 그 밖에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2) 위 '(1)'에 의해서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3.지정대리 청구인의 지정 취소'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지정대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50 공작용자동차에 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공작용자동차(이하 '공작차'라 함)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또는 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1) 캐터필러(컷팅엣치, 엔드빗드를 포함), 배토판 버킷(딥퍼를 포함), 포오크, 삽날, 로울러 등 작업중 언제나 땅에 닿는 부분
   (2) 드로프햄어, 디이젤햄어, 파일드라이버(재크,리이더 등을 포함) 등 사용의 목적에 따라 교환 장착하는 부품
2. 회사는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작차에서 분리하여 사용하는 코오드, 와이어, 호오스, 체인, 드릴 등 적재부속품은 자동차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51 농경용자동차에 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경용자동차의 쟁기, 로우터리, 사이드로우터리, 타이어, 트레일러 등 사용목적에 따라 갈아 끼우는 부분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원동기 장착 부분)과 동시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52 기계장치에 관한「자기차량손해」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기재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 53 주차위반 피견인차량에 관한 대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대물배상」을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주차위반차량(이하 '피견인차량'이라 함)을 견인개시한 때부터 차량보관장소로 인도한 때까지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견인차량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그 피견인차량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견인개시한 때'라 함은 견인용자동차의 특수연결장치로 피견인차량을 연결하여 견인동력장치의 작동을 개시한 때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견인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자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견인차량의 시건장치 개폐작업으로 인한 손해

**4.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하되,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2)'의 비용은 보상한도에 불구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보통약관 <별표2> 「대물배상」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64 리스자동차 인도기간 보장담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리스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리스계약자에게 피보험자동차를 인도하는 기간(이하 '인도기간'이라 함)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리스자동차'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대여업자와 대여시설 이용자간에 시설대여계약 체결에 따라 대여 받아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인도기간'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시설대여업자가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자동차를 인도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단, 인도기간은 이 특별약관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을 넘지 않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이하 '의무보험'이라 함)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단, 「대물배상」의 경우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리스계약자에게 피보험자동차를 인도 후 리스계약자 명의로 유효한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이 특별약관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이 경과 후 발생한 사고

**4. 자동적용**

이 특별약관 가입 시 '운전자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자동 적용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図 Eco Point 리워드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 수리 시 리싸이클(재활용)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저탄소·녹색성장에 참여하게 되어 지구환경을 지키는데 기여하는 상품입니다.

**1. 특별약관의 적용**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물배상」에 따라 보상받는 피해 자동차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받는 피보험자동차 중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이 <별표>의 대상부품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와 제휴한 정비업체에서 신품이 아닌 리싸이클(재활용) 부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친환경 에코부품 사용 할인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 '1. 특별약관의 적용'에 따라 리싸이클(재활용) 부품으로 교환한 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대상·차종부품 및 Eco Point(에코 포인트) 적립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Eco Point를 피보험자에게 적립하여 드립니다.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리싸이클(재활용) 부품'이라 함은 회사와 제휴한 업체에서 검사,세척,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한 중고 재활용 부품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Eco Point(에코 포인트)'라 함은 리싸이클(재활용) 부품 사용으로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는 피보험자에게 적립해드리는 포인트로서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보통약관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현금으로 보상 (1포인트는 현금 1원으로 환산)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대물배상」에 따라 보상받는 피해 자동차의 경우 피해 자동차 소유자이며, 피보험자동차의 경우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험금의 동시 환입**

(1) 보통약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보험금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2) 차량 수리 후 부품의 하자로 신부품으로 재수리 요청 시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5. 리싸이클(재활용) 부품 제공이 안 되는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 '1. 특별약관의 적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

우에는 신부품을 사용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이때 Eco Point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리싸이클(재활용) 부품의 재고가 없거나 리싸이클 부품의 배송처가 도서·산간 지역인 경우

(2) 리싸이클(재활용) 부품 사용 시 지급되는 보험금(Eco Point 및 대차료 등 포함)이 신부품 사용 시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3) 피보험자가 리싸이클(재활용) 부품 사용을 요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부품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6. 보통약관 적용의 배제**

이 특별약관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 표> 대상·차종부품 및 Eco Point(에코 포인트) 적립기준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대상차종</td><td>■ 최초 신규 등록일부터 8년이 경과한 자동차</td></tr>
<tr><td>대상부품</td><td>■ Part 1 : 프런트-도어, 리어-도어, 본네트, 트렁크-패널<br>■ Part 2 : 프런트-범퍼, 리어-범퍼, 프런트-휀다, 전조등<br>■ Part 3 : 사이드-미러, 테일-램프<br>■ Part 4 : 안개등, 전·후방주차보조센서, 룸미러<br>■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부품</td></tr>
<tr><td>Eco Point 적립기준</td><td>(1) Eco Point는 매 사고마다 교환하는 리싸이클(재활용) 부품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소형A</th><th>소형B</th><th>중 형</th><th>대 형</th><th>다인승</th></tr>
<tr><td rowspan="4">중고 부품</td><td>Part1</td><td>40,000</td><td>50,000</td><td>50,000</td><td>70,000</td><td>70,000</td></tr>
<tr><td>Part2</td><td>20,000</td><td>30,000</td><td>30,000</td><td>30,000</td><td>20,000</td></tr>
<tr><td>Part3</td><td>10,000</td><td>10,000</td><td>20,000</td><td>20,000</td><td>10,000</td></tr>
<tr><td>Part4</td><td colspan="5">10,000</td></tr>
<tr><td colspan="2">재제조 부품</td><td colspan="5">30,000</td></tr>
</table>
(2) 한 사고로 2개 이상의 리싸이클(재활용)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Eco Point를 합산합니다.</td></tr>
</table>

##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 또는 일방과실사고로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또는「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때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부품' 이란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하며, 'OEM 부품 공시가격' 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③항에서 말하는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의 환입**

(1)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2) 품질인증부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OEM 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돌려준 경우에 한하여 OEM 부품으로 재교환이 가능합니다.

**6. 적용배제**

회사는 이 특별약관 '2. 보상내용' 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품질인증부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 지연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가 OEM 부품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 포함)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초과하거나, OEM 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③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의한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부품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57] 자기차량손해 침수해 한정 보상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무보험 가입대상에 한함) 또는 1종 화물자동차로서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제21조(보상하는 손해) 및「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2. 보상하는 손해'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의 침수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만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항의 기준에 따릅니다.

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③ 피보험자동차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입니다.

###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관련법상 주차가 허용된 곳 이외의 장소에 주차중일 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관련법상 주차가 허용된 곳'이라 함은 아래의 장소를 말합니다.

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주기장 및 주기가 허용된 곳

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지

③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도로교통법」에 의해 주차가 허용된 곳

④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 5. 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제24조의 내용에 따릅니다. 단, 보통약관 제24조 제1항 3호에도 불구하고, '전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58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기명피보험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경우

**2. 증명서류의 제출**

(1)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 증명서'라 함)을 제출하여 위 '1. 가입대상'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증명서를 위 '(1)'의 장애인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장애인 전용보험으로의 전환**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2. 증명서류의 제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1. 가입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2) 위 '(1)'에 따라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표시됩니다.

**4. 전환 취소**

(1) 보험계약자가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취소를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전환을 취소하여 드리며, 전환 취소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납입영수증에 일반보장성보험으로 표시됩니다.

(2) 위 '(1)'에 따라 전환 취소된 경우, 재전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3) 최초 전환을 요청했던 당해년도에 위'(1)'에 따라 전환 취소한 경우, 당해연도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납입영수증에 일반보장성보험으로 표시됩니다.

**5. 준용규정**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소득세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별표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⑤⑨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특별약관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 신청이 예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자율주행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이하 '대인사고'라 함)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이하 '대물사고'라 함) 그로 인한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 본래 기능과는 다르게 동작되어 발생한 사고

②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③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사고로 법원의 확정판결, 사고조사 등에 따라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된 사고

〈용어정의〉

1. 이 특별약관에서 '자율주행모드'라 함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율주행 자동차 스스로 운행 중인 상태를 말하며, 자율주행모드에서는 운전석에 탑승중인 사람을 운전자 및 운전 중인 것으로 봅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라 함은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장비, 소프트웨어 등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장치를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호기, 안전표지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지능형교통체계 등을 말합니다.

###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친족피보험자

③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④ 사용피보험자

⑤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 이외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일방과실 사고인 경우. 단, '2. 보상하는 손해'의 ②에 해당하는 사고는 보상합니다.

(3) 보통약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피보험자동차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보통약관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에 따라 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6. 준용규정**

(1) 회사는 위 '2. 보상하는 손해' 및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하여 보통약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및 「대물배상」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합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대인배상I」 또는 「대인배상II」를 이 특별약관의 대인사고, 보통약관 「대물배상」을 이 특별약관의 대물사고로 대체하여 보통약관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①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위험담보 추가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1) 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6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2.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특별약관 규정에 따릅니다.

## ⑩ Eco 마일리지 환급금 대체사용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I(계기판 사진전송 방식)' 또는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II(커넥티드 방식)'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정산**

(1)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I(계기판 사진전송 방식)」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3)' 또는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II(커넥티드 방식)」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의 (3)'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회사가 정하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회사는 송부 받은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하여 보험료 정산금액이 있는 경우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I(계기판 사진전송 방식)」 및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II(커넥티드 방식)」의 '7. 보험료 정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산금액

전액을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갱신계약의 보험료로 상계 처리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정산금액은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3. 특별약관 적용 제외**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갱신계약을 회사와 체결하지 않는 경우

②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계기판 사진전송 방식)」 또는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Ⅱ(커넥티드 방식)」 보험료 정산금액을 환급받기를 요청한 경우

③ 회사의 사정에 따라 위 '2. 보험료 정산'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61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담보 특별약관

**1. 대물배상의 적용대체 등**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대물배상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 이 특별약관 가입 시 보통약관 대물배상을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2. 보상내용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대물배상의 보상내용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내용을 준용합니다.

**3. 가입금액의 선택**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62 물류차량 전용 미운행일 환급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물류 운송을 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

(2) 피보험자동차가 물류 운송 전용 화물차인경우로 물류회사 한 곳에 전속되어 운행하는 경우

(3)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인정한 차량관리시스템을 통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일을 확인 가능한 경우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차량관리시스템"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여부를 관리 및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관리 시스템으로써 회사가 인정한 장치를 말합니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일 및 미운행일 확인을 위해 차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정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때 회사는 보험기간 이전이나 통보된 미운행일에 보험사고가 없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사진이나 영상, 운행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또는 임의적으로 운행기록을 변경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차량관리시스템을 통해 통보받은 운행일이 미운행일인 경우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는 제2조(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구성)에서의 임의보험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임의보험"이라 함은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을 말합니다.

**5. 보험료 정산**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차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보통약관 제2조(Hicar 업무용자동차보험의 구성)에서의 임의보험에 대하여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차량 운행일 환급보험료 계산>
= 연 적용보험료(담보별) - 운행일 적용보험료*
*운행일 적용보험료 = 연 적용보험료(담보별) × 운행일/연간

(2) 위 '(1)'에 대하여 회사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보험료를 일괄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및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이용하거나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조회한 내용에 대해 통보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번호 : 1577-1001 • 홈페이지 : direct.hi.co.kr
  - 서면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화재보험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담당자 앞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번호 : 1577-1001 • 홈페이지 : direct.hi.co.kr
  - 서면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화재보험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담당자 앞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번호 : 1577-1001 • 홈페이지 : direct.hi.co.kr
  - 서면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화재보험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담당자 앞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 코리아크레딧뷰로㈜ 02-708-1000 www.allcredit.co.kr
  - 한국신용정보㈜ 1588-2486 www.mycredit.co.kr
  - 한국신용평가정보 02-3771-1000 www.creditbank.co.kr

## (3)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규정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인 | 대한손해보험협회 정보보호담당자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
|---|---|---|
| 02-3701-8016<br>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63<br>(실무담당자:02-3701-8923) | 02-3702-8679<br>서울 종로구 5길 68<br>코리안리빌딩 6층 | 02-3145-5114<br>서울 영등포구<br>여의대로 38 |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가 및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 편리한 보험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계약조회/변경 | 보험계약대출 | 증명서 발급 | 사고접수

- 홈페이지 direct.hi.co.kr
- 콜 센 터 1577-1001(보험가입 및 안내)
  1588-5656(고장출동 및 사고접수)
- 스마트폰
  QR코드 스캔> 스마트 고객센터 다운로드

현대해상

* 본 약관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콜센터(1577-1001)로 연락주십시오.

고객만족경영대상 명예의 전당 헌액

글로벌고객만족경영대상 명예의 전당 헌액

2023 글로벌고객만족도조사 장기보험 하이라이프 1위 자동차보험 하이카 1위

2022 지속가능성지수 손해보험 부문 1위

2023 우수콜센터 인증

# 현대해상화재보험

03183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빌딩
대표전화:1577-1001 | direct.hi.co.kr

자동차상품파트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4859호
(유효기간 2024.12.10~2025.12.10)